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107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이지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서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2. 22. 접수 제1357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45,1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D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카카오톡의 공동구매 채널 'E'에서 상품권, 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5. 3. D과 혼인하였다가, 2021. 8. 5.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 나. 원고 A는 D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청소기, 상품권, 골드바 등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에 관한 반환채권으로서 145,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다. 원고 B는 D에 대하여 2020. 10. 13.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에 관한 반환채권으로서 1,0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라. D은 2020. 10. 21.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80,000,000원을 매수하고, 2020.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20. 12. 22. 피고에게 D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1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피고와 D은 2021. 4. 30.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 2021호협60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1. 8. 5.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2)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들에 대하여 146,1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2020. 12. 15.경 D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D이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두 자녀의 양육비의 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2020. 12. 31.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글에 ‘남편도 이혼하자는 거 저도 살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알면 안 되니깐 전날 제가 살집 구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2020. 12. 31.경까지는 D과 피고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와 D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가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것은 2020. 12. 15.부터 4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30.경인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D이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와 D이 2020. 12. 15.경 협의이혼에 합의하기로 하면서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과 두 자녀의 양육비의 일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8012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D의 배우자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들의 채권액 합계인 146,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 A에게 145,1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에 의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부동산 목록

1동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대 521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73.2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219분의 42.73

